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362호
2.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5. 10. 20.
4. 회부일자 : 2025. 10. 23.

II . 제안이유

- 정부 감액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분,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 연장에 따른 무상교육 경비 등 세입 증감 내역을 예산에 반영하고, 특별교부금 등 외부 목적지정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III. 예산안 편성규모

1.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B)	증감내역	
	금액(A)	비율		금액(A-B)	비율
총 규 모	11,940,119	100	11,799,252	140,867	1.2
세 입	중 앙 정 부 이 전 수 입	6,885,344	57.7	6,911,704	△26,360 △0.4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4,610,273	38.6	4,443,903	166,370 3.7
	기 타 이 전 수 입	18,406	0.2	18,342	64 0.3
	자 체 수 입	124,998	1.0	124,505	493 0.4
	전 년 도 이 월 금	297,167	2.5	297,167	0 0.0
	금 용 자 산 회 수	3,931	0.0	3,631	300 8.3
세 출	인 건 비	7,279,438	61.0	7,307,573	△28,135 △0.4
	교 육 행 정 기 관 운 영 비	40,632	0.3	40,632	0 0.0
	학 교 운 영 비	970,233	8.2	970,233	0 0.0
	교 육 사 업 비	2,701,427	22.6	2,529,212	172,215 6.8
	시 설 사 업 비	886,064	7.4	884,008	2,056 0.2
	재 무 활 동	10,741	0.1	11,126	△385 △3.5
	예 비 비 및 기 타	51,584	0.4	56,468	△4,884 △8.6

2.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목적지정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추경	우선확정
합 계		11,940,119	100	11,799,252	140,867	1.2	△90,622	△15,132	246,621
중앙 정부 이전 수입	보 통 교 부 금	6,068,601	50.8	6,241,282	△172,681	△2.8	△172,681	0	0
	특 별 교 부 금	256,511	2.2	196,197	60,314	30.7	0	0	60,314
	증 액 교 부 금	77,627	0.7	0	77,627	순증	77,627	0	0
	국 고 보 조 금	40,507	0.3	34,354	6,153	17.9	0	0	6,153
	특별회계전입금	442,098	3.7	439,871	2,227	0.5	0	△15,132	17,359
	계	6,885,344	57.7	6,911,704	△26,360	△0.4	△95,054	△15,132	83,826
자치 단체 이전 수입	법 정	지 방 교 육 세	1,902,908	15.9	1,902,908	0	0.0	0	0
		담 배 소 비 세	249,125	2.1	249,125	0	0.0	0	0
		시 도 세	1,909,662	16.0	1,909,662	0	0.0	0	0
		학 교 용 지 부 담 금	3,779	0.0	3,779	0	0.0	0	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112,215	1.0	112,215	0	0.0	0	0
		교육급여보조금	9,436	0.1	9,436	0	0.0	0	0
		무상교육경비 전 입 금	3,639	0.0	0	3,639	순증	3,639	0
	비 법 정	소계	4,190,764	35.1	4,187,125	3,639	0.1	3,639	0
		광역자치단체	248,556	2.1	152,157	96,399	63.4	0	0
		기초자치단체	170,910	1.4	104,578	66,332	63.4	0	0
		지방이양사무 지원사업보전금	43	0.0	43	0	0.0	0	0
		소계	419,509	3.5	256,778	162,731	63.4	0	0
		계	4,610,273	38.6	4,443,903	166,370	3.7	3,639	0
		162,731							
기타이전수입 (지원금)		18,406	0.2	18,342	64	0.3	0	0	64
자 체 수 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579	0.0	1,579	0	0.0	0	0	0
	행 정 활 동 수 입	5,931	0.0	5,931	0	0.0	0	0	0
	자 산 수 입	17,558	0.1	17,553	5	0.0	5	0	0
	이 자 수 입	19,915	0.2	19,915	0	0.0	0	0	0
	기 타 수 입	80,015	0.7	79,527	488	0.6	488	0	0
계		124,998	1.0	124,505	493	0.4	493	0	0
지 방 채		0	0.0	0	0	0	0	0	0
기 타	전년도이월금	297,167	2.5	297,167	0	0.0	0	0	0
	금융자산회수	3,931	0.0	3,631	300	8.3	300	0	0
	계	301,098	2.5	300,798	300	0.1	300	0	0

3.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목적지정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추경	우선확정	
합 계		11,940,119	100	11,799,252	140,867	1.2	△90,622	△15,132	246,621	
인건비	공무원	4,670,587	39.1	4,678,182	△7,595	△0.2	△7,595	0	0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1,265,233	10.6	1,283,207	△17,974	△1.4	△17,974	0	0	
	사립학교	1,343,618	11.3	1,346,184	△2,566	△0.2	△2,566	0	0	
	계	7,279,438	61	7,307,573	△28,135	△0.4	△28,135	0	0	
경상비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40,632	0.3	40,632	0	0.0	0	0	0	
	학교운영비	722,609	6.1	722,609	0	0.0	0	0	0	
	공립	722,609	6.1	722,609	0	0.0	0	0	0	
	사립	247,624	2.1	247,624	0	0.0	0	0	0	
	소계	970,233	8.2	970,233	0	0.0	0	0	0	
계		1,010,865	8.5	1,010,865	0	0.0	0	0	0	
사업비	교육사업비	2,701,427	22.6	2,529,212	172,215	6.8	△12,485	△15,132	199,832	
	시설사업비	67,543	0.6	73,746	△6,203	△8.4	△6,203	0	0	
	학교신증설	67,543	0.6	73,746	△6,203	△8.4	△6,203	0	0	
	일반시설	751,328	6.3	741,261	10,067	1.4	△36,346	0	46,413	
	급식시설	67,193	0.5	69,001	△1,808	△2.6	△1,994	0	186	
	소계	886,064	7.4	884,008	2,056	0.2	△44,543	0	46,599	
계		3,587,491	30	3,413,220	174,271	5.1	△57,028	△15,132	246,431	
재무활동	지방채 상환 등	0	0	575	△575	△100	△575	0	0	
	B T L 상환	2,941	0	2,751	190	6.9	0	0	190	
	기금전출금	7,800	0.1	7,800	0	0.0	0	0	0	
	계	10,741	0.1	11,126	△385	△3.5	△575	0	190	
예비비 및 기타		51,584	0.4	56,468	△4,884	△8.6	△4,884	0	0	

I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추경예산안은 2025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362호로 제출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분,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 연장에 따른 무상교육 경비 등 세입 증감 내역을 예산에 반영하고, 특별교부금 등 외부 목적지정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됨.

2. 주요 검토의견

가. 총괄 검토

1)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

- 정부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0%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며¹⁾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코로나 시기 누적된 채무로 자영업자 연체율 및 폐업률이 상승하는 등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전망함. 아울러 이와 같은 성장둔화,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라 국세 수입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함²⁾.

- 이에 정부는 2025년 6월 23일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예산심의 결과³⁾ 경기진작(15.2조

1) 경제성장률(전기비, %): ('24.1분기): 1.2 ('24 2분기)△0.2 ('24 3분기)0.1 ('24 4분기)0.1 ('25. 1분기)△0.2, 대한민국정부(2025.6.2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 대한민국정부(2025.6.2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경과
- 정부의 추경안 국회 제출: 2025.6.23.

원), 민생안정(5.3조원), 세입경정(10.3조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총 31조 8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

- 이와 관련하여 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국세수입은 본예산(382조 4,296억원) 대비 10조 3천억원($\triangle 2.7\%$)감액 편성되었고, 교육부 소관 사업 중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개 사업⁴⁾이 내국세 세입 경정으로 인해 $\triangle 1$ 조 9,882억 3천 5백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보통교부금이 감액되어 기정예산(6조 2,412억 8천 2백만원)보다 $\triangle 1$,726억 8천 1백만원 감액됨⁵⁾.

[표 -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국세수입

(단위 : 조원)

구분	2024년 실적 (A)	2025년			
		본예산 (B)	제2회 추경예산안 (C) ⁶⁾	전년 대비 (C-A)	본예산 대비 (C-B)
국세수입	336.5	382.4	372.1	35.6	$\triangle 10.3$
일반회계	326.2	371.8	361.5	35.3	$\triangle 10.3$
소득세	117.4	126.8	126.8	9.4	-
법인세	62.5	88.3	83.6	21.1	$\triangle 4.7$
상속세및증여세	15.3	14.5	15.4	0.1	0.9
부가가치세	82.2	87.6	83.3	1.1	$\triangle 4.3$
개별소비세	8.7	9.7	8.7	0.1	$\triangle 0.9$
증권거래세	4.8	3.8	3.8	$\triangle 0.9$	-
교통·에너지·환경세	11.4	15.1	14.0	2.6	$\triangle 1.1$
관세	7.0	8.4	8.4	1.4	-
교육세	5.4	6.0	5.8	0.4	$\triangle 0.3$
종합부동산세	4.2	4.1	4.1	$\triangle 0.1$	-
기타	7.4	7.4	7.4	0.02	-
특별회계	10.4	10.6	10.6	0.3	0.0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25.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결: 2025.6.26. ~ 7.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의결: 2025.7.4.
- 본회의 의결: 2025.7.4.
- 4) 보통교부금(내국세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 5)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025.7.18.).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수정 교부 알림.
- 6)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국세수입은 동일함.

[표 - 2] 2025년도 교육부소관 제2회 추가경정 확정예산

(단위 : 백만원)

	'24년	'25년			증감내역	
	본예산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B)	증감액	비율
□ 총지출	100,561,515	104,868,403	104,985,836	102,626,370	△2,359,466	△2.3
○ 예산	94,387,307	98,089,605	98,205,305	95,845,839	△2,359,466	△2.4
○ 기금	6,174,208	6,778,798	6,780,531	6,780,531	-	-
[교육분야]	94,339,200	98,182,225	98,299,658	95,940,192	△2,359,466	△2.4
■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78,501,729	81,380,742	81,380,742	79,493,725	△1,887,017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8,873,209	72,279,438	72,279,438	70,281,203	△1,998,235	△2.8
(유아교육비특별회계)	3,210,631	3,102,013	3,102,013	3,102,013	-	-
■ 고등교육	14,477,200	15,549,100	15,666,533	15,194,084	△472,449	△3.0
■ 평생·직업교육	1,216,239	1,102,260	1,102,260	1,102,260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041,182	15,863,472	15,979,172	15,506,723	△472,449	△3.0
■ 교육일반	146,569	150,123	150,123	150,123	-	-
[사회복지분야]	6,222,315	6,566,128	6,566,128	6,566,128	-	-
■ 기초생활보장	160,399	165,171	165,171	165,171	-	-
■ 공적연금	6,061,916	6,400,957	6,400,957	6,400,957	-	-
[보건분야]	-	120,050	120,050	120,050	-	-
■ 보건의료	-	120,050	120,050	120,050	-	-

출처: 교육부(2025.7.)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확정예산 개요.

○ 한편 고교무상교육은 2019년 12월 3일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⁷⁾ 고교 무상교육 소요 비용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의 분담 비율이 규정되었고, 이후 2020년 고교 2·3학년,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⁸⁾.

○ 그러나 동 법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2조⁹⁾에 의해 2020년 1월 1일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 2019. 12. 3.][법률 제1667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8)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보도자료(2021.2.26.). 이제 더 이상 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에 다녀요! -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부터 2024년 12월 31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었는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예산안 편성 당시 고교 무상교육
기한 연장과 관련된 동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2025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음.

- 이후 「지방재정교부금법」은 2025년 8월 26일에 개정되어 고교 무
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기존의 제14조는 삭제되고 제14조의2가
신설¹⁰⁾되면서 동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되었는바¹¹⁾, 교육부는 2025년도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경비(776억
2천 7백만원)를 편성하였음¹²⁾.
- 이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의 주요 원인은 정부 「2025년
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 경정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 2025. 8. 26][법률 제21029호, 2025.8.2
6., 일부개정시행」 개정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 경비 재도입에 따른 증
액분을 반영하기 위해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조정하려는 것임.

9) □ 부 칙 <법률 제16673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 2025. 8. 26][법률 제21029호, 2025.8.26., 일부개정」
제14조 삭제 <2025. 8. 26.>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
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하여야 한다.

□ 부 칙 <법률 제21029호, 2025. 8.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4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14조
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1) [221193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회),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 원
안가결.

12) 서울시는 2026년도 본예산안에 2025년도 하반기 고교무상교육경비를 편성함.

따라서 교육청은 금번 추경안을 통해 과다 추계된 세입예산은 감액하고 추가 세입은 증액하는 등 세입 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금번 추경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2) 추경예산안 편성 규모

-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11조 7,992억 5천 2백만원)보다 1,408억 6천 7백만원(1.2%)이 증액편성된 11조 9,401억 1천 9백만원임.

[표 -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

2회 추경예산 (A)	기정예산 (B)	증감(A-B)		재원구분	
		금액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재원
11,940,119	11,799,252	140,867	1.2	△90,622	231,492

- 세입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663억 7천만원, 기타이전수입 6천 4백만원, 자체수입 4억 9천 3백만원, 금융자산회수 3억원 등 총 1,672억 2천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63억 6천만원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총 1,408억 6천 7백만원(1.2%)이 증액 편성됨.
- 또한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281억 3천 5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48억 8천 4백만원, 재무활동 3억 8천 5백만원 등 총 △334억 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교육사업비 1,722억 1천 5백만원, 시설사업비 20억 5천 6백만원 등 사업비가 총 1,742억 7천 1백만원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408억 6천 7백만원(1.2%)이 증액 편성됨.

나.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

1) 이전수입

- 금번 추경예산안의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triangle 263$ 억 6천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증액교부금이 776억 2천 7백만원, 특별교부금이 603억 1천 4백만원, 국고보조금이 61억 5천 3백만원, 특별회계전입금 22억 2천 7백만원 증액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이 $\triangle 1,726$ 억 8천 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가) 중앙정부이전수입(주요사업별 설명자료 5~10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목적지정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추경	우선확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402,740	53.7	6,437,479	$\triangle 34,739$	$\triangle 0.5$	$\triangle 95,054$	60,315	0	
보 통 교 부 금	6,068,601	50.8	6,241,282	$\triangle 172,681$	$\triangle 2.8$	$\triangle 172,681$	0	0	0
특 별 교 부 금	256,511	2.2	196,197	60,314	30.7	0	0	60,314	
증 액 교 부 금	77,627	0.7	0	77,627	순증	77,627	0	0	0
국 고 보 조 금	40,507	0.3	34,354	6,153	17.9	0	0	6,153	
특 별 회 계 전 입 금	442,098	3.7	439,871	2,227	0.5	0	$\triangle 15,132$	17,359	
계	6,885,344	57.7	6,911,704	$\triangle 26,360$	$\triangle 0.4$	$\triangle 95,054$	$\triangle 15,132$	83,826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6조 686억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조 2,412억 8천 2백만원보다 1,726억 8천 1백만원($\triangle 2.8\%$)이 감액 편성됨.
- 이는 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국세수입이 본예산(382조 4,296억원) 대비 10조 3천억원($\triangle 2.7\%$)감액 편성되었고¹³⁾, 이에 교육부 소관 사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개 사업¹⁴⁾

이 내국세 세입 경정으로 인해 1조 9,882억 3천 5백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이 본예산(69조 6,595억 7천 2백만원) 대비 1조 9,273억 1천 3백만원($\triangle 2.8\%$) 감액¹⁵⁾ 되었기 때문임.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지난 2025년 7월에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보통교부금을 확정교부액(6조 2,412억 8천 2백만원)대비 $\triangle 2.8\%$ (1,726억 8천 1백만원) 감액·수정하는 것으로 통보함¹⁶⁾.
- 다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2,426억 4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961억 9천 8백만원으로 보다 603억 1천 4백만원(30.7%)가 증액 편성됨.
- 이는 국가시책수요 24개 사업(209억 3천 3백만원), 지역교육현안수요 8개 사업(198억 3천 3백만원), 디지털교육혁신 3개 사업(4억 7천 7백만원), 재난 안전 4개 사업(190억 7천 1백만원)이 2025년 7월 16일부터 2025년 9월 25일 사이에 목적지정 재원으로 우선확정되었는바,

지난 2025년 5월 26일에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없었기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임.

13) 대한민국정부(2025.6.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 보통교부금(내국세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15)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025.7.18.).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수정 교부내역.

16)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025.7.18.).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수정 교부알림.

[표 - 4] 특별교부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재 원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추경 편성액	우선확정일
국가시책 사업 24개 사업	직업교육환경개선	직업계고매력도제고	1,200	2025-07-18
	유아교육운영	유보통합운영	11,122	2025-07-25
	특수교육복지	특수유보통합운영	50	2025-07-31
	교육복지우선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	85	2025-09-21
	특색교육과정운영	고교학점제역량강화지원	88	2025-09-21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입학전형지원	3,224	2025-09-22
	교육행정기록물관리	데이터기반과학행정지원체계구축	147	2025-09-22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유초중등정보공시운영	43	2025-09-22
	늘봄학교운영	늘봄지원센터운영	147	2025-09-23
	정보보안관리	교육정보화지원	44	2025-09-23
	정보보안관리	클라우드보안관제	57	2025-09-23
	ICT활용교육지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	69	2025-09-23
	특색교육과정운영	고교학점제인프라구축지원	398	2025-09-23
	특색교육과정운영	고교학점제역량강화지원	435	2025-09-23
	학력평가관리	학생평가·학생부공정성및신뢰도제고	508	2025-09-23
	학력향상지원	책임교육학년지원	420	2025-09-23
	학력향상지원	두드림학교및학습종합클리닉센터지원	408	2025-09-23
	학생생활지도지원	민주시민역량함양지원	6	2025-09-23
	교원연수운영	교원의교육전념여건및연수체제개선	9	2025-09-24
	ICT활용교육지원	AI교육역량강화멀티트랙연수개발	47	2025-09-24
	특수교육복지	특수돌봄및방과후학교운영	746	2025-09-24
	늘봄학교운영	특수늘봄운영	941	2025-09-24
	교원인사관리	교원의교육활동보호	366	2025-09-25
	교육자료개발보급	교수학습자료개발	373	2025-09-25
지역현안 사업 8개	학교급식환경개선	급식시설개선	186	2025-07-16
	학교시설확충	기타증축	816	2025-07-16
	학교시설환경개선	기타사업	16,164	2025-07-16
	학교시설환경개선	도장공사	555	2025-07-16
	학교시설환경개선	바닥개선	534	2025-07-17
	학교시설환경개선	방수공사	295	2025-07-16
	학교시설환경개선	외벽개선	1,154	2025-07-16
	학교시설환경개선	화장실개선	129	2025-07-16
디지털교 육혁신 3개	ICT활용교육지원	AIDT적용교원연수지원	390	2025-07-18
	교원연수운영	디지털기반교육연수	63	2025-07-28
	교육과정운영지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교원연수운영	24	2025-07-28
재난안전 4개	학교시설환경개선	안전관리(정밀점검)	24	2025-07-18
	학교시설환경개선	안전관리(내진보강)	17,683	2025-09-21
	학교시설환경개선	집중호우재해대책수요	1,018	2025-09-22
	학교시설환경개선	기타사업	347	2025-09-22

○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증액교부금은 776억 2천 7백만 원으로 순증됨. 이는 지난 8월 26일, 「지방재정교부금법」의 제14조의2가 신설¹⁷⁾되면서 동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7년 12월 31일 까지 연장됨¹⁸⁾에 따라 동 법 제14조의2제1항에 의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비용 중 국가 부담 경비를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국가 부담 경비 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제1항¹⁹⁾은 국가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조 제2항²⁰⁾에서는 시·도의 경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²¹⁾으로 정하는 바에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 2025. 8. 26][법률 제21029호, 2025.8.26., 일부개정」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18) □ 부 칙 <법률 제21029호, 2025. 8.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4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 2025. 8. 26][법률 제21029호, 2025.8.26., 일부개정」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 2025. 8. 26][법률 제21029호, 2025.8.26., 일부개정」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 2025.4.1.][대통령령 제34981호, 2024.11.5., 일부개정]

제10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가 법률 제1667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시·도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하는 금액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교육부의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부담 비율은 4.5%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2제2항에서 규정한 시·도 부담률 5%보다 △0.5%p 감소된 것으로 이와 같이 감소된 0.5%p는 교육부가 추가로 부담함.
- 따라서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비용 부담 비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2제1항에 따른 47.5%에서 △0.5%p 증액된 48%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위한 증액교부금도 서울시교육청에서 필요한 고교 무상교육 총비용의 48% 중 하반기분(776억 2천 7백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 5] 시·도별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분담 비율

시·도	부담 비율
서울특별시	4.5%
부산광역시	4.5%
대구광역시	3.9%
인천광역시	3.6%
광주광역시	3.8%
대전광역시	3.1%
울산광역시	3.4%
세종특별자치시	3.0%
경기도	2.9%
강원도	9.5%
충청북도	6.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4. 삭제

시·도	부담 비율
충청남도	8.4%
전라북도	9.9%
전라남도	13.2%
경상북도	10.3%
경상남도	5.7%
제주특별자치도	12.0%

②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405억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43억 5천 4백만원보다 61억 5천 3백만원(17.9%) 증액 편성됨.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국고보조금은 시설사업운영의 ‘교육 공간총괄기획(에코스쿨)’ 20억, 각종체육활동의 ‘학교운동부 및 체육계학교 지원’ 1억 5천 5백만원, 학교시설환경개선의 ‘그린스마트스쿨’ 39억 9천 8백으로 총 61억 5천 3백만원임.
- 동 사업들이 목적지정 재원으로 우선확정된 날짜를 살펴보면 ‘교육 공간총괄기획(에코스쿨)’은 2025년 8월 29일, ‘학교운동부 및 체육계학교 지원’은 2025년 9월 21일, ‘그린스마트스쿨’은 2025년 9월 23일인바,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목적지정 재원으로 확정되었기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임.

[표 - 6] 국고보조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재 원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성립전 우선사용	우선 확정일
국고보조금	시설사업운영	교육공간총괄기획	2,000	2025-08-29
	각종체육활동	학교운동부및체육계학교지원	155	2025-09-21
	학교시설환경개선	그린스마트스쿨	3,998	2025-09-23
소계(3건)			6,153	

③ 특별회계전입금

- 특별회계전입금은 4,420억 9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398억 7천 1백만원보다 22억 2천 7백만원(0.5%) 증액 편성됨.
 - 이는 교육부의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계획²²⁾’에 따라 5세 무상보육료(58억 3천 6백만원) 및 5세 무상교육비(115억 2천 3백만원)가 173억 5천 9백만원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던 3~5세 급식비 및 방과후과정비 등의 지원 사업 예산이 유아수 감소²³⁾에 따라 △151억 3천 2백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임.

[표 - 7] 서울특별시교육청 5세 무상교육·보육비 교부액

(단위 : 천원)

구분	공립유치원 (A)	사립유치원 (B)	어린이집 (C)	합계 (A+B+C)
서울	646,920	10,876,140	5,836,320	17,359,380

[표 - 8] 3세~5세 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 세부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연령	유아학비		유아보육료	전체
급식비 및 방과후 과정비 등	3세	-	△5,154,709	△5,154,709
	4세	-	△4,786,950	△4,786,950
	5세	△381,004	△4,809,720	△5,190,724
	소계	△381,004	△14,751,379	△15,132,383
무상 교육비	5세	11,523,060	5,836,320	17,359,380
전체		11,142,056	△8,915,059	2,226,997

22) 교육부(2025.7.). 2025년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계획: 유다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 서울특별시교육청 5세 무상교육·보육비 교부액

23) 2025년 유아보육료 지원대상 유아수 감소: 3세 △1,535명, 4세 △1,425명, 5세 △1,432명
2025년 유아학비 지원대상 유아수 감소: 5세 △317명

나) 자치단체이전수입(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1~14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회 추 경 예 산		기 정 예 산	증 감 내 역				
	금 액	비 율		증 감 액	비 율	일 반 재 원	목 적 지 정	
합 계	4,610,273	38.6	4,443,903	166,370	3.7	3,639	0	162,731
법 정 이 전 수 입	4,190,764	35.1	4,187,125	3,639	0.1	3,639	0	0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지방교육세	1,902,908	15.9	1,902,908	0	0.0	0	0
	담배소비세	249,125	2.1	249,125	0	0.0	0	0
	시 도 세	1,909,662	16.0	1,909,662	0	0.0	0	0
	학 교 용 지 부 담 금	3,779	0.0	3,779	0	0.0	0	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2,215	1.0	112,215	0	0.0	0	0
	교육급여보조금	9,436	0.1	9,436	0	0.0	0	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3,639	0.0	0	3,639	순증	3,639	0
	비법정이전수입	419,509	3.5	256,778	162,731	63.4	0	0
	광역자치단체	248,556	2.1	152,157	96,399	63.4	0	96,399
	기초자치단체	170,910	1.4	104,578	66,332	63.4	0	66,332
	지방이양사무지원사업보전금	43	0.0	43	0	0.0	0	0

① 법정이전수입

- 금번 추경예산안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4조 1,871억 2천 5백만원) 보다 36억 3천 9백만원(0.1%) 증가한 4조 1,907억 6천 4백만원이 편성됨.
-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교부금과 마찬가지로 이는 지난 8월 26일, 「지방재정교부금법」의 제14조의2가 신설²⁴⁾되면서 동 조항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 2025. 8. 26][법률 제21029호, 2025.8.26., 일부개정」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의 유효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²⁵⁾에 따라 동 법 제 14조의2제2항에 의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비용 중 자치구 부담 경비²⁶⁾를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것임.

② 비법정이전수입

○ 다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²⁷⁾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비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2,567억 7천 8백만 원) 대비 1,663억 7천만원(63.4%)이 증가한 4,195억 9백만원이 편성됨.

- 이 중 광역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1,521억 5천 7백만원) 보다 963억 9천 9백만원(63.4%) 증가한 2,485억 5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학교급식운영의 무상급식 사업에서 유·초·중·고등학교 등의 무상급식을 위한 식품 관리비 및 조리실무사 등의 인건비를 위해 945억 4천 7백만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의 노후시설개선 및 외부환경개선 등을 위해 총 14억 9천 8백만원, 학교인정평생교육시설에 급식비 지원을 위해 2억 6천 5백만원, 학교 CCTV설치에 9천만 원을 편성하기 위한 것임.

25) □ 부 칙 <법률 제21029호, 2025. 8.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4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6) 자치구의 부담률은 서울시 부담률(4.5%)의 1/2인 2.25%임.

27)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 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표 - 9] 광역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재원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사업내역	추경편성액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학교시설환경개선	평생교육시설및운영	평생교육시설지원 학력인정평생 교육시설 급식비지원	264,891
		학교급식운영	무상급식	식품비 및 인건비 94,546,590
			기타사업	노후시설개선 1,378,521
			소방시설개선	공립초 등 소방시설개선 35,125
			외부환경개선	공립초 등 외부환경개선 70,000
			전기시설개선	공립초 등 전기시설개선 14,000
			소 계	1,497,646
		학생안전관리	안전인프라구축 학교CCTV설치지원	90,050
합 계				96,399,177

- 한편 기초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1,045억 7천 8백만원) 보다 663억 3천 2백만원(63.4%) 증가한 1,709억 1천만원이 편성됨.
- 증액분(663억 3천 2백만원)의 96.1%(637억 4천만원)은 학교급식 운영의 무상급식 사업에서 유·초·중·고등학교 등의 무상급식을 위한 식품 관리비 및 조리실무사 등의 인건비를 위해 편성되었으며, 그 외 기타증축(공립중 시설비)으로 15억원, 개봉초 등의 BTL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1억 9천 1백만원 등이 편성됨.

[표 - 10] 비법정전입금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재원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사업내역	추경편성액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학교급식운영	무상급식	식품비 및 인건비	63,739,796
	평생교육시설및운영	평생교육시설지원	학력인정평생 교육시설 급식비지원	176,594
	평생학습운영	성인문해교육지원	마포, 고덕, 노원 평생학습관 성인문해교육지원	25,000
	민간투자사업상환	BTL원금/이자	개봉초 외 2건 BTL 원금 및 이자	190,555
	학교시설환경개선	그린스마트스쿨	공립초 설계비 등	700,000
	학교시설확충	기타증축	공립중 시설비	1,500,000
합 계				66,331,945

다) 기타이전수입(사업별 설명자료 15~16쪽)

- 금번 추경예산안의 기타이전수입 중 민간이전수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²⁸⁾’ 공모에 서울시 교육청 5개 도서관(강서도서관, 강남도서관, 고척도서관, 송파도서관, 종로도서관)이 선정되어 각 도서관별 1천만원씩, 총 5천만원 지원되어 증액 편성됨.
- 다음으로 기타이전수입 중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전국 교육연수원간 교류·협력 사업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6급 일반공무원 2명의 위탁 교육 훈련비 1천 4백만원이 전입되어 증액 편성됨.

28)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5.3.14.). 2025년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 통합공모 시행.

2) 자체수입(사업별 설명자료 17~27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회 추경 예산		기정 예산	증 감 내 역				
	금 액	비 율		증 감 액	비 율	일 재	반 원	목 적 지 정
합 계	124,998	1.0	124,505	493	0.4	493	0	0
자 체 수 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579	0.0	1,579	0	0.0	0	0
	행정활동수입	5,931	0.0	5,931	0	0.0	0	0
	자 산 수 입	17,558	0.1	17,553	5	0.0	5	0
	이 자 수 입	19,915	0.2	19,915	0	0.0	0	0
	기 타 수 입	80,015	0.7	79,527	488	0.6	488	0

○ 금번 추경예산안의 자체수입은 기정예산(1,245억 5백만원) 보다 4 억 9천 3백만원(0.4%) 증가한 1,249억 9천 8백만원이 편성됨.

- 자체수입 중 기타수입(제제금 수입)은 기정예산(795억 2천 7백만 원) 보다 4억 8천 8백만원(0.6%) 증가한 800억 1천 5백만원이 편 성되었는바,

이는 공무원징계령 등을 위반한 3명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4억 6천 6백만원과 감사에 의해 공공재정환수법을 위반한 2개 기관 에 대한 제제부가금 2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 한편 자체수입 중 자산수입은 운반건설 기계 및 차량 매각으로 5백만 원 증액됨.

[표 - 11] 기타수입(제제금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

연번	소관 부서(기관)	환수 대상	근거	금액(원)	비고
1	중등교육과	○○고 교사	2025년 제6회 서울특별시교육청	31,646	징계

(단위 : 천원, %)

연번	소관부서(기관)	환수 대상	근거	금액(원)	비고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의결		부가금
2	중등교육과	○○고 교사	2025년 제7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의결	433,610	
3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중 교사	2025년 제2회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의결	612	
소계				465,868	
4	서부교육지원청	○○○○○ 유치원	민원감사 결과에 따른 공공재정 환수금 징수	1,165	제재부가금
5	서부교육지원청	○○유치원	사안감사 결과에 따른 공공재정 환수금 징수	21,525	
소계				22,690	
합계				488,558	

3) 금융자산회수(보증금회수)(사업별 설명자료 25쪽)

(단위 : 백만원, %)

구분	2회 추경 예산		기정 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재	반원	목적지정
합계	301,098	2.5	300,798	300	0.1	300	0	0
기타	전년도 이월금	297,167	2.5	297,167	0	0.0	0	0
	금융자산회수	3,931	0.0	3,631	300	8.3	300	0

- 금번 추경예산안의 금융자산회수는 2018년에 붕괴되었던 서울상도 유치원이 2025년 8월에 이전하면서 그동안 원아 수용을 위해 임대 했던 건물의 보증금을 회수하면서 3억원이 증액 편성됨.

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내역		재원구분		목적지정 추경편성 우선확정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증감액 (C=A-B)	증감률 (C/B)	일재 반원		
합계	11,940,119	100	11,799,252	100	140,867	1.2	△90,622	△15,132	246,621
인건비	7,279,438	61	7,307,573	61.9	△28,135	△0.4	△28,135	0	0
경상비	계	1,010,865	8.5	1,010,865	8.6	0	0.0	0	0
	기관운영비	40,632	0.3	40,632	0.3	0	0.0	0	0
	학교운영비	970,233	8.2	970,233	8.2	0	0.0	0	0
사업비	계	3,587,491	30	3,413,220	28.9	174,271	5.1	△57,028	△15,132 246,431
	교육사업비	2,701,427	22.6	2,529,212	21.4	172,215	6.8	△12,485	△15,132 199,832
	시설사업비	886,064	7.4	884,008	7.5	2,056	0.2	△44,543	0 46,599
재무활동	계	10,741	0.1	11,126	0.1	△385	△3.5	△575	0 190
	지방채상환	0	0	575	0.0	△575	△100	△575	0 0
	BTL 상환	2,941	0	2,751	0.0	190	6.9	0	0 190
	기금전출금	7,800	0.1	7,800	0.1	0	0.0	0	0 0
예비비 및 기타	51,584	0.4	56,468	0.5	△4,884	△8.6	△4,884	0	0

-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증액 및 목적지정 재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408억 6천 7백만원 증액편성 되었음.
- 재원의 성격에 따른 우선확정분은 제1차 추경예산 이후(7월 이후) 확보된 재원으로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필수적이거나 이미 사업이 확정된 예산 2,466억 2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부적으로 무상급식비, 내진보강 등 전입금과 특별교부금 등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이 중 무상급식비(유,초,중,고)는 전체 우선확정분 중 64.2%인 1,582억 8천 6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표 - 11] 무상급식 세부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세세부사업	사업항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내역	
				증감액	증감율
기초단체전입금	무상급식	인건비	21,490,290	10,956,346	10,533,944 96.1
		(유치원)식품관리비	9,175,565	5,829,593	3,345,972 57.4
		(유치원)인건비	5,340,351	3,478,451	1,861,900 53.5
		식품관리비	118,986,095	70,988,115	47,997,980 67.6
서울시 전입금	무상급식	인건비	32,227,586	16,426,688	15,800,898 96.2
		(유치원)식품관리비	13,761,709	8,743,118	5,018,591 57.4
		(유치원)인건비	8,010,513	5,217,628	2,792,885 53.5
		식품관리비	175,859,995	104,925,779	70,934,216 67.6

- 또한 특별교부금(국가시책 209억 3천 3백만원, 지역현안사업 198 억 3천 3백만원, 재난안전관리 190억 7천 1백만원, 디지털교육혁신 4억 7천 7백만원)은 전체 우선확정분 중 24.5%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목적지정재원 중 추경을 통해 사업비 규모가 변동되는 추경 반영분은 △151억 3천 2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이는 ‘누리과정지원’의 유아보육료(3~5세) 및 유아학비(5세)가 유아수 감소로 인해 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 다음으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일반재원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906억 2천 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일반재원의 경우 모든 세출 항목이 감액되었고 특히 시설사업비는 일반재원 감액분의 △49.2%(△445억 4천 3백만원)로 가장 크게 감액 편성됨.

- 순차적으로 인건비(△281억 3천 5백만원), 교육사업비(△124억 8천 5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48억 8천 4백만원), 지방채 상환 등(△5억 7천 5백만원)이 감액 편성됨.
 - 이와 같이 감액된 주요 원인은 시설사업비의 경우 ‘그린스마트스쿨’ 93억 2천만원, ‘학교신설(공립특수학교)’ 57억 1천 5백만원, 인건비는 ‘계약제교원인건비(보수)’ 73억 3천 6백만원, ‘교원인건비(명예퇴직수당)’ 71억 5천만원, 교육사업비는 ‘교과용도서지원(AI디지털교과서)’ 68억 8천 5백만원, ‘늘봄학교운영(초등돌봄교실운영)’ 35억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임.
- 이와 같이 일반재원의 감액은 세입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있는 것인바,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중심으로 감액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되었던 일부 사업이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다시 감액되는 등 사업계획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감액의 근거가 ‘불용’인지 ‘절감’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예산 조정의 타당성이 부족함.
- 특히 감액 사업의 대부분은 시설사업비로서 이 중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감액은 결국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음.
- 이처럼 금번 추경예산안의 일반예산 감액 편성은 사업 취소 및 사업시기 변경, 집행잔액 등을 사유로 들고 있으나 실증적 근거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불용을 이유로 감액을 한 경우, 당초 사업예산의 과대 편성 또는 사업집행의 관리 부실이 병존할 가능성이 높음.

더욱이 안전 관련 사업은 감액 대상이 아닌 우선확보 대상으로 관리되어야 할 임.

○ 물론 금번 제2차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세출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초 예산을 감액 편성해야 하는 기본 방향은 타당함.

그러나 감액의 근거 불명확, 우선확정 재원의 과도한 확대, 시설사업의 지나친 감액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함.

따라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세출 감액 편성시 감액 사유를 불용과 절감 및 계획 변경 등으로 구분 명시하고, 안전 관련 사업은 예산 감액의 예외로 관리하는 등 지나친 시설사업비의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용의 균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표 - 1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전 내역

재 원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우선 확정액	(단위 : 백만원)
				우선확정일
	합계		246,621	
국고보조금	시설사업운영	교육공간총괄기획	2,000	2025-08-29
국고보조금	각종체육활동	학교운동부및체육계학교지원	155	2025-09-21
국고보조금	학교시설환경개선	그린스마트스쿨	3,998	2025-09-23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직업교육환경개선	직업계고매력도제고	1,200	2025-07-18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유아교육운영	유보통합운영	11,122	2025-07-25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특수교육복지	특수유보통합운영	50	2025-07-31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교육복지우선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	85	2025-09-21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특색교육과정운영	고교학점제역량강화지원	88	2025-09-21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입학전형지원	3,224	2025-09-22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교육행정기록물관리	데이터기반과학행정지원체계구축	147	2025-09-22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유초중등정보공시운영	43	2025-09-22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늘봄학교운영	늘봄지원센터운영	147	2025-09-23
특별교부금	정보보안관리	교육정보화지원	44	2025-09-23

(단위 : 백만원)

재 원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우선 확정액	우선확정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정보보안관리	클라우드보안관제	57	2025-09-23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ICT활용교육지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	69	2025-09-23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특색교육과정운영	고교학점제인프라구축지원	398	2025-09-23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특색교육과정운영	고교학점제역량강화지원	435	2025-09-23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학력평가관리	학생평가·학생부공정성 및 신뢰도제고	508	2025-09-23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학력향상지원	책임교육학년지원	420	2025-09-23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학력향상지원	두드림학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원	408	2025-09-23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학생생활지도지원	민주시민역량함양지원	6	2025-09-23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교원연수운영	교원의 교육전념여건 및 연수 체제개선	9	2025-09-24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ICT활용 교육지원	AI교육 역량강화 멀티트랙연수개발	47	2025-09-24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특수교육복지	특수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746	2025-09-24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늘봄학교 운영	특수늘봄 운영	941	2025-09-24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교원인사관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366	2025-09-25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교육자료개발보급	교수학습자료개발	373	2025-09-25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학교급식환경개선	급식시설개선	186	2025-07-16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학교시설확충	기타증축	816	2025-07-16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학교시설환경개선	기타사업	16,164	2025-07-16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학교시설환경개선	도장공사	555	2025-07-16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학교시설환경개선	바닥개선	534	2025-07-17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학교시설환경개선	방수공사	295	2025-07-16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학교시설환경개선	외벽개선	1,154	2025-07-16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학교시설환경개선	화장실개선	129	2025-07-16
특별교부금 (디지털)	ICT활용교육지원	AIDT적용교원연수지원	390	2025-07-18
특별교부금 (디지털)	교원연수운영	디지털기반교육연수	63	2025-07-28
특별교부금 (디지털)	교육과정운영지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교원연수운영	24	2025-07-28
특별교부금 (재난안전관리)	학교시설환경개선	안전관리(정밀점검)	24	2025-07-18
특별교부금 (재난안전관리)	학교시설환경개선	안전관리(내진보강)	17,683	2025-09-21
특별교부금 (재난안전관리)	학교시설환경개선	집중호우재해대책수요	1,018	2025-09-22

(단위 : 백만원)

재 원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우선 확정액	우선확정일
특별교부금 (재난안전관리)	학교시설환경개선	기타사업	347	2025-09-22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누리과정지원	유아보육료	5,836	2025-09-02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누리과정지원	유아학비	11,523	2025-09-02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평생교육시설운영	평생교육시설지원	113	2025-07-17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평생교육시설운영	평생교육시설지원	151	2025-09-21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학교급식운영	무상급식	86,735	2025-09-21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학교급식운영	무상급식	7,811	2025-09-23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학교시설환경개선	기타사업	1,379	2025-07-11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학교시설환경개선	소방시설개선	35	2025-07-11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학교시설환경개선	외부환경개선	70	2025-07-14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학교시설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14	2025-07-14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학생안전관리	안전인프라구축	90	2025-09-25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평생학습운영	성인문해교육지원	14	2025-07-17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평생교육시설운영	평생교육시설지원	76	2025-07-17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민간투자사업상환	BTL원금/이자	29	2025-07-25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민간투자사업상환	BTL원금/이자	27	2025-07-25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평생학습운영	성인문해교육지원	7	2025-08-14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학교시설환경개선	그린스마트스쿨	700	2025-08-14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평생학습운영	성인문해교육지원	4	2025-08-25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민간투자사업상환	BTL이자	24	2025-09-11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학교시설확충	기타증축	1,500	2025-09-11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학교급식운영	무상급식	58,532	2025-09-21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평생교육시설운영	평생교육시설지원	101	2025-09-21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학교급식운영	무상급식	5,208	2025-09-23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민간투자사업상환	BTL원금/이자	57	2025-09-24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민간투자사업상환	BTL원금/이자	54	2025-09-24
전입금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전문교육(전입금)	14	2025-07-18
기타지원금	도서관운영	인문정신문화사회적확산	10	2025-07-17
기타지원금	도서관운영	인문정신문화사회적확산	10	2025-07-17

(단위 : 백만원)

재 원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우선 확정액	우선확정일
기타지원금	도서관운영	인문정신문화사회적확산	10	2025-07-17
기타지원금	도서관운영	인문정신문화사회적확산	10	2025-07-25
기타지원금	도서관운영	인문정신문화사회적확산	10	2025-07-29

-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